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8,433,000	18,552,990
일반회계	555,500,000	16,665,000
특별회계	62,933,000	1,887,990
공기업특별회계	45,150,000	1,354,500
수도사업특별회계	21,550,000	646,5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0,000	708,000
기타특별회계	17,783,000	533,490
수질개선특별회계	4,052,000	121,5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61,000	61,83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560,000	16,8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50,000	37,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50,000	73,500
치수사업특별회계	4,990,000	149,700
기반시설특별회계	580,000	17,4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540,000	46,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87,62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